완주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

[시행 2021.12.23] (제정) 2021.12.23 조례 제2936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 관리책임전화번호 : 063-290-3041

제3조(지원대상)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인플루엔자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수급자 등
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-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- 라. 결혼이주여성
- 마. 감염병 대응 업무, 대민업무 등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감염위험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완주군 소속 공무원
- 바. 그 밖에 완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및 전파차단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장티푸스 :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별표 1에 따른 고위험군
- 3. 신증후군 출혈열 : 「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」 별표 1에 따른 고위험군
- 4. 대상포진 : 만 65세 이상인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수급자. 다만,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